

문서번호	민원여권과-6198
결재일자	2016.2.23.
공개여부	부분공개

주무관	민원처리담당	민원여권과장	행정국장
이학연	이명식	김송열	02/23 손정수
협 조 자			

- 2016년 제1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-  
**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보고**

**2016. 02.**

**행정국  
민원여권과**

# - 2016년 제1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-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보고

## I 심의회 개요

- 일 시 : 2016. 02. 22 (월) 15:30시
- 장 소 : 행정국장실
- 참석위원 : 5 명
  - 위원장 : 행정국장
  - 위 원 : 김귀옥 위원, 김보하 위원, 이재욱 위원, 행정지원과장

## II 심의 사항

- 청 구 인 : 박○○(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)
- 주관부서 : 건축과
- 심의안건 : 건축과의 비공개'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
  - 청구내역 : 종암3구역 재건축에 관련 “추진위원 해산을 위한 동의서” 및 “재건축 해산을 위한 동의서” 청구
  - 비공개 사유 :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재산보호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,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대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수 있어 공개할 수 없음.
  - 이의신청 내역 :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, 해산동의서에 관한 법률은 한시적인 법으로 2016.1.31.종료가 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개하여야 함.  
또한, “재건축 해산을 위한 동의서” 에 대한 답변이 없으며, “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” 역시 개인의 재산보호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면 개인 정보는 삭제하고 법률에 따라 공개 바람.

### Ⅲ

## 심의 결과

#### 의결 내용 :

청구인의 종암3구역 재건축에 관련 “추진위원 해산을 위한 동의서” 및 “재건축 해산을 위한 동의서”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건은 “기각”으로 결정한다.

#### 개최 사진



- 붙임 : 1. 심의자료 1부  
2. 심의의결서 1부.  
3. 회의록 1부. 끝.